

학교폭력 예방법이란?



학교폭력예방법이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의 선도,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.

I 학교폭력예방법,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

기존 법률	변경된 법률
[시행 2020. 3. 1] [법제16441호, 2019. 8. 20, 일부개정]	[시행 2021. 6. 23] [법률 제17668호, 2020. 12. 22, 일부개정]
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(생략)	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p>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,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자,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, 피해 학생이 상담·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 <p>다만,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p>
<신 설>	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,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	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(교사를 포함한다)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,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,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1 ~ 6. (생략)	1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2(장애학생의 보호) ① (생략)	제16조의2(장애학생의 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	<p>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.	<p>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p>
<신 설>	<p>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.</p>

II 학교폭력예방법,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

1

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조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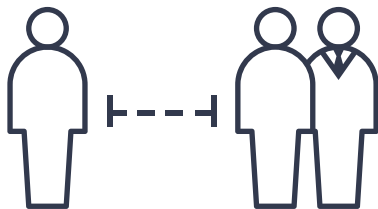


개정 주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조항”입니다.
(법 제13조 제4항, 제16조의 2 제2항)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의사, 학교폭력전문변호사,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한 것 외에도,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위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를 강력히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규정을 부과한 이상,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의견개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

2

가해자(교사 포함) 피해학생 간 일시분리



두 번째 주요 내용은 바로 가해자(교사를 포함)와 피해학생 간의 “일시분리”입니다.
(법 제16조 제1항, 시행령 제17의2)

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, 피해학생의 반대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“지체없이 가해자(교사를 포함)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할 의무”가 부과됩니다.
이때의 분리는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이렇게 적용됩니다.

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 적용 기준

- 학교의 장이 피해 학생의 보호,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

피해 학생 긴급조치 종류



- 제1호 (심리상담), 제2호(일시 보호), 6호 (그 밖에 필요한 조치)
- 피해 학생 긴급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추인 불필요



- 제1호 (서면사과), 제2호 (접촉금지), 3호 (교내봉사), 제5호 (특별교육), 제6호 (출석정지)
- 긴급조치 중, 출석정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 부여
- 가해 학생 긴급조치는 추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함
-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가 인정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
- 긴급조치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경우,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가능

조치에 대한 불복절차

피해학생/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자/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, 학교의 설립형태(국,공립,사립)에 관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과거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, 재심청구 혹은 행정심판청구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, 관련 법 개정으로 불복 절차가 행정심판청구로 일원화되었습니다.

